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2019.12.13.

국토교통부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 등이 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통상적으로 사생활 보호, 방범 문제,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가 둔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건축물 옥상을 통한 대피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이에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이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된다.

	현행	개선
대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①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 *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옥상 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
		③ 1,000㎡ 이상인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통상 1,500㎡ 규모
		④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출처: 국토교통부, (2019).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12월 13일 보도자료.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

화재 위험성이 높은 200㎡ 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자동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